

## 1 정규직전환 지원

### ☛ 지원대상 :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

※ 지원 제외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,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,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

### ☛ 지원요건(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)

- ① 6개월 이상 고용되고,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·파견·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(장)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 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
- ②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
- ③ 4대보험 가입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- ④ 기존 동종·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

## ☞ 지원수준 및 한도

### ① 지원 수준

- **임금증가액 보전금**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%를 지원(월 최대 60만원)

※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됨

- **간접노무비**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지원  
(2018년 7월 18일 이후 전환자부터 적용)

### ② 지원 인원 한도

-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지원인원은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% 한도(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)

\* 다만, 직전 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중에 최초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한 달로부터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까지의 월평균 기간제 근로자 수의 120%를 한도로 하며,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%를 한도로 함

\* 파견근로자·사내하도급근로자(기간제)·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정규직전환은 지원 인원 한도 없음

## ☞ 지급 기간 및 주기

-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 지급  
(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)